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적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제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미 국

1. 연방거래위원회의 사무국 보고서

－「21세기에의 전망 : 새로운 하이테크·글로벌(High-tech-global)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정책」발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 및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에서 오는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반트러스트법 집행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변호사 및 학술연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FTC 사무국은 1996년 5월, 동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하여, 「21세기에의 전망; 새로운 하이테크 · 글로벌(Hightech-global)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제언)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는, ① 합병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의 취급, ② 합병심사에 있어서 파산기업 및 불황산업의 취급, ③ 합병심사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의 획정(劃定), ④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트러스트법의 주지, ⑤ 기술혁신 및 지적소유권과 경쟁정책, ⑥ 합병심사에 있어서 기술혁신 성과의 결합에 대한 영향의 분석, ⑦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기업행동에 관한 경쟁, ⑧ 네트워크 및 규격에 관련되는 기업행동에 관한 경쟁분석, ⑨ 동업자간의 joint-venture 기타 제휴 등에 관하여 제언하고 있다.

이 제언 가운데에서 ① 합병심사에 효율성 취급은 현재까지 경쟁당국은 합병 타당성 검토에서 효율성의 취급주장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여 왔지만(최고재판소도 같음),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합병심사에서 합병이 가져 올 효율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합병 당해회사로부터 증거를 제출받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하고, 또한 「1992년도 합병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위하여 FTC ·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이 공동으로 Task-Force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동업자간 joint-venture 기타 제휴 등에 관해서는, 글로벌화 및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은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반트러스트에 대한 소추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FTC는 금년 6월 본건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경쟁당국은 경쟁사업자간의 제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joint-venture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2. 1992년 합병 가이드라인의 개정

FTC 및 사법성은 1996년 6월 상기 제언에 따라 19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위한 공동의 Task-Force를 구성하고 동 Task-Force에서 합병심사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금년 4월 8일 FTC 및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동 가이드라인 「제4장 효율성」을 개정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효율성이 합병심사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효율성에 의하여 합병기업이 경쟁적으로 행동하

여 가격의 인하, 품질의 개선, 서비스의 향상, 신제품의 발매로 이어지는 정도에 의거함을 명시

② 합병에서 효율성 고려사항의 명확화

③ 합병 당해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는 효율성 사항의 명확화

④ 효율성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경쟁촉진 효과의 분석을 위한 요소가 되는가 및 효율성의 효과의 실현이 지연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의 명시

3. 반트러스트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6년 3월, 반트러스트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일정한 합병(예를 들면, 단순히 임대 또는 투자를 위하여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하여 신청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합병사전신청서 제출 규칙'을 개정하였다(1996년 5월부터 시행).

4. '의료분야에 있어서 반트러스트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개정

FTC 및 반트러스트국은 1996년 8월, '의료분야에 있어서 반트러스트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정·발표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병원 등의 넷트웍(network)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의료분야에 있어 기술혁신을 촉진하였다.

EU

1. 합병규제규칙의 개정

구주위원회는 1996년 7월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 기업결합에 따른 합병규제의 일원적 처리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의 향상, 절차비용의 경감에도 기여하는 관점에서 동 규칙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1997년 6월 이사회에서 일부 수정한 후 합의했다. 동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상고 기준의 인하

현행 규칙은 ① 관계사업자의 전세계 합계 연간매상고가 50억ECU(약 577,525억원)를 초과하거나 또는 ② 2 이상의 관계사업자가 공동체시장에서 연간매상고가 각각 2억5천만ECU(약 2,888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③ 관계사업자의 각각 EU 역내 연간매상고 가운데 2/3를 동일 가맹국내에서 얻고 있는 경우에는 구주위원회에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현행 매상고 기준에 추가하여 「① 관계사업자 전부가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합계 연간매상고가 25억ECU(약 28,876억원)를 초과, ② 2 이상의 관계사업자가 공동체시장에서 연간매상고가 각각 1억ECU(약 1,155억원)를 초과, ③ 3개국 이상의 가맹국 각각에 있어 관계사업자 모두의 합계매상고가 1억ECU(약 1,155억원)를 초과하고, ④ 상기 ③에 해당하고 3개국

이상의 가맹국의 각각에 있어 2 이상의 관계사업자의 매상고가 각각 0.25억ECU(약 280억원)를 초과하고, ⑤ 관계사업자는 각각 동일 가맹국 내에서 EU 역내에 있어 연간매상고의 2/3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동 규칙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1996년 7월에 제출되었던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규칙의 매상고 기준에 관하여 전세계 매상고를 30억ECU(약 34,652억원) 초과, 역내 매상고를 1.5억ECU(약 1,732억원) 초과로 인하함을 제안하고 있었다(1ECU=1,155원05전).

(2) 협조적 합작투자(Joint-Venture)도 합병규칙 적용범위에 포함

종래 EU경쟁법에서는 합작투자(이하「JV」라 한다)에 관하여는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즉, 집중적인 JV(① 영업기반의 안정성, ②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③ 모회사와의 제품시장에서 비경합성의 각 요소가 인정되는 JV)와 협조적 JV(집중적JV와는 반대로 ① 설립의 단기성, ② 모회사에의 종속성, ③ 모회사와의 제품시장에서 경합성의 각 요소가 인정되는 JV)로 구분되고, 전자에 관해서는 합병규칙이 적용되고 후자에 관해서는 법 제85조가 적용되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아 왔으나 협조적 JV에 관해서도 합병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강한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금회의 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협조적 JV에 관해서는 합병규칙이 적용되도록 되었지만 이것은 주로 절차규정에 적용하는 데 불과하다. 이에 관한 판단에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

(3) 금융·증권업에 관한 매상고의 산정방법의 변경

개정 전의 합병규칙에서는 금융·증권업에 관해서는 매상고 대신에 총자산의 1/10의 금액을 가지고서 전세계 합계매상고 및 각사 EU내 개별매상고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당해 사업에 관한 수익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EU내 매상고의 산정은 EU소재의 부서·지점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4) 기타의 개정내용

기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구주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합병에 관하여, 경쟁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동체시장에서 그 합병이 적합함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에 관하여 신청서 제출 후에 당사회사로부터 제시된 수정조건에 따라서도 경쟁상 중요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정의 명확화를 기하였다.

(5) 카르텔행위 정보제공자에 대한 제재금 면제제도 도입

EU구주위원회는 반·밀트 위원(경쟁정책담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점점 교묘해지는 카르텔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주위원회에 카르텔행위에 관한 다음의 입증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제재금을 50%~75%에서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① 카르텔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 증거를 최초

로 제공하는 자

② 카르텔에 관한 정보제공 이후에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있을 것

③ 당해 카르텔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주위원회에 제공하고 심사과정을 통하여 계속,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④ 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카르텔에 강제적으로 참가시키거나 카르텔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2. 수직적 제한에 대한 EU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청사진(Green Paper)의 발표

경쟁제한적협정에 관해서는 EU경쟁법 제85조 제3항의 적용제외 규정이 있다. 현재 배타적 판매계약과 배타적 구입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에 관하여 일괄적용면제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구주위원회는 1997년 1월, 이의 일괄적용면제규칙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수직적 제한에 대한 EU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청사진(Green Paper)을 발표했다. 현행의 수직적 제한에 관계되는 적용면제규칙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을 고려하고, 청사진(Green Paper)은 일정의 제한적 조항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면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폭넓은 선택기법을 제시하였다.

독 일

1.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안)을 발표(1997. 7. 31)

(1) 이번 연방경제성(안)의 발표시 리구스 롯트 연방경제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쟁제한금지법은 1957년 7월 25일에 독일연방회의에서 제정한 이래 40년이 경과하여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독일 시장경제에 관한 이 기본법은 현대에도 분명하게 해석이 되고 또한 중요한 규정에 관하여 EU경쟁법과의 조화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수직적인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와 같이 독일법의 내용이 EU법보다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했다. 한편, 수출입 Cartel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과 같이, 글로벌화된 경제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고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보아 합리성이 없어진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에 따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

(2) 이번 개정(안)에서 소매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 집중화의 진행과 관계없이 격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식료품 소매업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매상이익률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정된 물가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의 입법에 의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3) 본 안에 대한 공청회는 금년 9월 2일에 개최되었다. 연방정부는 경쟁제한금지법의 개정을 이번 입법기간 중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1997년 9월에 각의에

서 결정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4)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카르텔 금지와 적용제외

가. 카르텔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장래는 카르텔 계약의 실시시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카르텔 계약의 체결시에 금지된다.

나.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제한의 구별은 유지된다.

다. 카르텔 금지의 적용제외리스트(list)는 조건 카르텔, 리베이트 카르텔 및 수출입 카르텔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보다 축소된다.

라. EU법에 맞도록 사업자간의 협력에 대한 추가의 적용제외 요건을 첨부하였다.

② 수직적 협정

가. 금후도 수직적 협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남용규제에만 법에 따라 규제한다.

나. 가격구속의 금지는 유지된다.

다. 출판물에 의한 가격구속은 유지된다.

③ 남용, 차별, 기타의 경쟁제한적 행위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은 EU법에 비추어 금지된다.

나. 시장지배의 정의 가운데 독일 내외의 기업에 의한 실현 또는 잠재적인 경쟁에 관해서도 기준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다. 판매망과 중요한 설비(Essential facilities)에의 접근(access) 거절에 관한 獨自의 남용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제분야에서 그와 같은 설비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라. 상대적인 시장력에 의한 부당한 방해와 차별에 대한 금지는 유지된다.

④ 합병규제

가. 10억마르크(5,852억원)의 매상고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합병은 연방카르텔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발생이나 강화와 연결되는 합병은 장래에 걸쳐서도 연방카르텔청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 연방카르텔청은 장래에는 합병의 금지뿐만 아니라 허가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연방경제장관에 의한 허가의 규정은 유지된다.

⑤ 적용제외의 범위

가. 지금까지의 적용제외의 범위는 크게 후퇴한다.

나. 지금까지의 운수분야에 대한 적용제외는 삭제한다.

다. 농업, 은행, 보험, 저작권이용회사의 각각의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그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극히 한정된 특별규정은 유지된다.

라. 전력과 가스(gas)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에너지-경제법에 의한 신규제 때문에 연방정부(안)과 관련해서 삭제한다.

영 국

1. Margaret Beckett 무역산업장관, 경쟁법의 개정원(안)을 공포

영국 Margaret Beckett 무역산업장관은, 지

난 '97년 8월 7일 영국 경쟁법의 개정원안을 공포했다. 동 개정원안은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반국민으로부터 comment를 수렴한 이후 금년 가을 중의 성립을 목표로 하여 의회에 상정된다.

이번의 개정원(안)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해서도 금지하고, 공정거래청 장관에 의한 제재금의 부과 등의 결정 대상이 되어 있다. EU경쟁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보면 작년에 발표한 자문문서로부터 한층 전진되어 있다.

◈ 무역산업성 발표문 전문 ◈

Margaret Beckett 무역산업장관은 금일(8월 7일), 영국경쟁법의 개정원안(draft bill)의 공포와 함께 동 개정안의 실현에 적극적인 도전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동 무역산업성 장관은 「반경쟁적협정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금지규제 : 개정원안」("A prohibition approach to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abuse dominant position:a draft bill")의 발표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효과적이거나 또는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영국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자극한다.

현행의 경쟁법은 양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의 개정은 오랜 기간동안 지연되어 왔으며, 前 정권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다. 소비자는 보다 좋은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들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억지와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위에 또한 산업계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일체 강요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금년 가을 경쟁법에 원칙금지접근(prohibition-based approach)을 도입하는 법개정을 실현해서 이것을 달성하고 싶다. 이 개정법은 카르텔 외에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된다. 중대한 남용행위에 관해서는 제재금이 부과된다. 신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반경쟁적 행위에 따라 피해를 받은 경쟁업자와 소비자는 피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가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규정의 결정은 이유를 첨부하여 발표한다. 그래서 그 결정에 관해서 新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 관해서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 新경쟁위원회는 현재의 독점합병위원회의 기능을 인수하여 승계한다. 나는 현재 독점합병위원회의 조사접근(approach)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新경쟁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이 기능을 가지게 하고 싶다.

이번에 내가 이 개정법 원안을 발표한 목적은 제안내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이해관계자가 comment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데 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시비를 수렴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

2. 현행법과 이번 개정법 원안의 주요한 차이점

(1) 반경쟁적 협정(카르텔 등)

	현 행 법	개 정 법 원 안
근거법	• 1976년 제한적거래관행법, 1976년 재판매가격에 있어서의 제한적협정, 카르텔등에 관한 규정	• 2개법을 폐지(및 제한적 관행법원을 폐지) • EC조약 85조를 기초로 하여 금지규정을 도입
조치절차	① 제한적거래관행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협정은, 등록부에 기재(국무총리가 승인한 비밀부문은 제외) ② 중요하지 않은 안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청 장관은 국무총리에게 법원에 제소하지 않음을 요청한다. ③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 한 재판매가격법에 위반하는 협정조항의 집행은 금지된다.	① 공정거래청 장관은 위반행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제재금을 결정 ② 공정거래청 장관은 적용제외에 관해서는 당해 행위의 플러스 효과를 산정 ③ 공정거래청 장관의 결정에 불복 하는 경우에는 新경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지배력의 남용

	현 행 법	개 정 법 원 안
근거법	① 1980년 경쟁법 ② 1973년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단일독점 및 복합독점에 관련규정	① 1980년 경쟁법 규정의 대부분 폐지 ② 1973년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단일독점 및 복합독점에 관련 규정은 존속 ③ 단일독점의 심사에 있어서는 금지된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의 대처만을 목적으로 함 ④ EC조약 86조를 기초로 하여 금지규정을 도입
조치절차	① 반경쟁적행위(시장지배력의 남용) 사안은 독점 · 합병위원회에 부의 ② 동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③ 동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무 총리가 조치를 최종 결정	① 공정거래청 장관은 협정조항에 위반행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제재금액을 결정 ② 공정거래청 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新경쟁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상기 1 및 2의 행위유형 공통)

	현 행 법	개 정 법 원 안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테스트	• 경쟁에 대한 효과에 따른 테스트
심사권한	• 한정적 심사권한	• 입회감사권을 포함 강력한 심사 권한
제 재 금 (fine)	• 제재금부과는 없음	• 과거의 행위도 포함하여 영국에서 매상고의 10%를 상한으로 하여 제재금이 부과됨
제3자의 권리	• 한정적 권리(재판매가격법 위반행위 또는 제한적거래관행법에 의한 협정신청서 제출의 지연에 관해서만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	• 제3자는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
심사완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중간조치	• 제한적거래법원은 위반행위에 관해서만 가능	• 반경쟁적협정 및 그 행위에 의문이 있을 때 금지가능

프랑스

1. 1986년 경쟁법 개정

1996년 7월, 1986년 경쟁법(「가격및경쟁의자유에관한1986년12월1일의명령」)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부당염매규칙의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Maker 및 상품을 가공하는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의 금지제도(제10-1조)의 도입

본 조항은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부당염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전의 형사상의 규정(제32조 ;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의 납품가격이하 판매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유통업자 자신이 가공하는 상품 이외에 자신이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제조비용이나 선전비와는 관계없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2) 기타 개정내용

이외에 경쟁평의회의 평의의원 정수의 증원(16인에서 17인으로 ; 제2조)과 제한적행위의 금지(제28조 ;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의 위반에 관계되는 벌칙(벌금)을 강화하였다.

일본

1. 일본정부 독점금지법 개정

-지주회사 설립의 자유화,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 제한규제대상 완화 및 국제계약신고제도의 폐지

일본정부는 지주회사의 전면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997년 6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본정부는 독금법 제정 이래 사업지배력집중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치열한 글로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의 개혁과 기업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독금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 금지"의 해제를 검토해 왔다.

또한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에 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규제대상을 완화하고 국제계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사업자의 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폐지키로 한 것도 이번 개정법에 포함시켰다.

1) 개정 요지

(1)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완화

가. 사업지배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금지(개정법 제9조 제1항, 제2항)

나. 지주회사를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당해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

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간접보유에 의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개정법 제9조제3항, 제4항)

다. 시장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개정법 제9조제5항) (지주회사 그룹의 종합적인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현저히 크고 자금과 관계되는 거래에 기인하는 타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크거나 또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유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공정 및 자유스런 경쟁의 촉진을 저해하는 경우)

라. 감시절차를 규정함(개정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총자산의 합계액이 3,000억¥(2조3,72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회사의 사업에 관해 보고하도록 함)

(2)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 개정

가. 주식보유총액 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회사에서 지주회사는 제외

나. 자기 및 타회사가 각각 현재 영위중인 업무를 분리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설립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총액제한에서 제외함(당해회사가 설립시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다. 100% 자회사의 주식(개정법 제9조의2제6호)

라. 벤처투자의 주식(개정법 제9조제1항제10호)

(3) 국제계약신고관계

신고제도를 폐지함(현행법 제6조제2항 삭제)

(4) 기타

독점금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일자, 국제계약신고는 공포일부터 시행)

캐 나 다

1. 캐나다 경쟁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산업대신은 1996년 11월 7일 경쟁법(Competition Act)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난 번의 경쟁법 개정(1996년) 이후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합병신고서 제출

합병신고서 제출에 관해서는 현행의 단기(약식제출)로는 1주간, 장기(정식제출)로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각각 2주간, 6주간으로 배로 늘렸다.

(2) 부당표시

부당표시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는 형사위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의 개정에 있어서는 부당표시의 대부분의 행위유형이 민사위반의 대상으로 되고, 일부의 중대사안도 형사위반의 대상이 된다.

(3)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 통신판매)

Tele-marketing을 직접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형사위반의 조항을 도입하였다.

호주

1. 거래관행법의 개정

호주의 거래관행법은 1995년 7월 20일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통일화를 기하고, 또한 기업형태의 여하에 불문하고 호주의 모든 기업을 거래관행법 제4장(반경쟁적 거래관행의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법 제4장 직제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조직을 재편하였다. 동 개정법의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주 또는 준주의 종전까지는 법적용의 면제를 받아 온 정부기업 및 헌법상의 제약으로 법적용을 받지 아니한 법인격을 갖지 않는 주내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관행법 제4장에 대응하여 창설된 주·준주법(경쟁코드)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전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경쟁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2) 개정법의 주요내용

① ACCC는 경쟁자간의 상품에 관한 가격협정을 인가할 수 있으며 50 이상의 참가자간의 권장가격협정에 대한 적용면제를 폐지하였다(제45조).

② 제3자 강제(third-Reinforcing)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였다(제47조).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확대하여 서비스업에도 적용토록 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가할 수 있다(제48조).

④ 가격차별의 금지규정을 폐지하였다(제49조). 개정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가. 제한적 거래에 관한 규정 및 경쟁코드는 '95년 8월 17일

나. 경쟁소비자위원회 및 전국경쟁평의회의 설치 : 아래 (3) 진입에 관한 법적제도는 '95년 8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가격감시법의 개정 및 경쟁, 소비자위원회에의 권한양도는 '95년 7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 주 또는 준주의 정부기관에 대한 법적용은 '95년 7월 20일부터 12개월 후, 또한 주 또는 준주의 전 기업에 대한 법적용은 '95년 8월 17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본다.

⑤ 전국적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중요사업 분야(배전 및 철도의 인프라설비서비스)에의 제3자에 의한 당해 공급망에의 참입(access)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제3A장).

(3) 집행기관 등의 재구축

① 거래관행위원회와 가격감시위원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를 창설했다(95년 10월 업무개시).

가. 위원장, 부원장,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1명의 상근위원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다('95년 개정시 새로 도입).

나. 경쟁관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전국적 기관으로 거래관행법 제4장, 제4A장, 제5장, 제5A장 및 경쟁코드의 제규정, 가격감시법을 소관으로 한다.

② 거래관행심판소는 명칭을 변경하여 호주 경쟁심판소(Australian competition Tribunal)로 개명했다. 연방재판소의 판사인 재판장과 산업, 상업, 경제, 법률 등에 지식·경험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ACCC가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해 내린 결정의 재심사, 해외에서의 합병에 관한 공포, 장관 또는 ACCC가 내린 진입에 대한 결정의 재심사를 소관으로 한다.

③ 자문기관으로 전국경쟁평의회를 설치 : 1명의 위원장과 최고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거래관행법 제3A장에 의하여 진입신청에 대해 권고를 행하고 주 또는 준주의 정부기업의 가격을 감시하는 외에 "경쟁원칙에 관한 협정(Competition principle Agreement)"에 대해 검토를 행한다.

뉴질랜드

1. 상업법과 1996년 법개정

뉴질랜드 경쟁법은 1986년의 상업법(Commerce Acts 1986)으로 동법은 1990년과 1996년에 개정되었다. 1996년 개정법은 사업취득(합병)의 금지규정에 관하여 당해 사업취득이 뉴질랜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외국에서의 취득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되도록 하는 등(제4조제3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본 협회는 지난 4월 15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약관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관련된 기타법령과 중요한 공정거래용어의 해설도 수록하였다. 또한 부록편에는 공정거래제도의 변천연혁과 공정거래법적용제외대상 및 과징금제도,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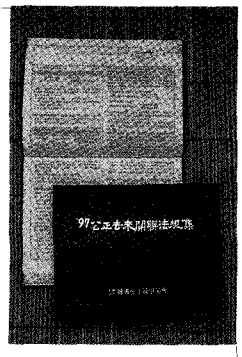

※ 『'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원이며, 구입신청 및 문의는 T.775-8870~2(조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